발 급 번 호



처리기간

8557-761-5957-587		소득확인증명서								
접 수 번 호		소득확인증명서 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)						즉 시		
5031073	26090									
소득자	성명	고귀환							1996/10/19	
소국사	주소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0길 24-10, 103호(연희동)								
									(단위 : 원)	
[]근로소	는득자용	(서민형은 는 경우	총급여액이 5천년 「종합소득세 신고	만원 ㅇ .(결정	하인 자민 ・경정)자·	<u></u> 가입 용」의	가능 종합	는, 근로소득 라소득금액으로	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 로 판단)	
귀속연도	, = 7	원천징수의무기 분 법인명(상호) 시			자			ラフム	호그러(카케레비크리)제	
	소득구				사업자등록번호			총급여(과세대상급여)액		
			ERVIOL		== 이하여백 ==					
			2,				5			
		7 T					<			
[]종합소	노득세 신	고(결정·경기	정)자 <mark>용</mark>	(서민* 근로소	형은 종합 <i>3</i> 득만 있는	노득금· 경우	액이 「근	3천8백만원 (로소득자용)	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, 의 총급여액으로 판단)	
귀속연도		종합(결정)소득금액			근로소득	유.	무	사업소득 유·무	근로·사업소득 외의 소득 유·무	
2021					유	V	무 [□ 유 ☑ 무	유 모 무	
		7.7			== 이하	여백 =	♦	E		
			V		1.3	4	1			
			7	세	Ę0	/				
[]연말전	성산한 사	업소득자용	(서민형은 시 사업소득 외 용」의 종합:	업소목 다른 소득금	투금액이 3 종합소투이 액으로 판	천8백년 있는 단)	만원 : 경우	이하인 자만 2 「종합소득	가입 가능, 연말정산한 ·세 신고(결정·경정)자	
귀속연도		원천징수의	무자				사업소득금액 해당 연도 소득금액)			
	법인]명(상호)	· () 사업자등록번호		(해당 연도 소			당 연도 소	-득금액)	









- * 본 증명의 위·변조 여부는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「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모바일 홈택스 > 민원증명(증명발급) > 민원증명 원본확인」에서 발급번호로 확인, 또는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.
- (공문서를 위·변조하거나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.) * 본 증명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대민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증명서입니다.



발 급 번 호 9557-761-5057-597			처 리 기 간						
8557-761-5957-587 접 수 번 호 503107326090		(개인	즉 시						
소득자	성명	고귀환	생년월일	1996/10/19					
꼬득사	주소	서울특별시 서디							
귀속연도		원천징수의	무자	사업소득금액					
	법인]명(상호)	사업자등록번호		사업소득금액 (해당 연도 소득금액)				
			== 이하여백 ==						
			MICE	1					
	A B A A B A A B A A B A A B A A B A A B A A B A A B A A B A A B A A B A A B A A B								
					2/=				
					CE				

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소득요건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1조의18제1항제 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)을 ([✔] 충족, [] 미충족) 함을 증명합니다.

다만,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직전 과세기간이 아닌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·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경우 또는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·결정,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증명서 상 총급여액·종합소득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9조의2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확인하여 신탁업자 등에게 통보하며, 가입(연장)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보받는 경우 그 통보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가입(연장) 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 등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.

2022 년 11 월 2 일

서대문세무서장

- 1. 근로소득(연말정산한 사업소득)만 있는 근로소득자(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) 또는 근로소득(연말정산한 사업소득)과 그 외의 소 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「종합소득세 신고(결정·경정)자용」과 「근로소득자용(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)」을 모두 기재합니다.
- 2.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(과세대상급여)액란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되며,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「소득세법」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(과세소득)을 기재합니다.
- 3. 종합소득세 신고(결정·경정)자용의 종합소득금액(결정소득금액)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합니다.
- 4. 증명신청일이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부터 기재하고,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부터 기재합니다.









- * 본 증명의 위·변조 여부는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「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모바일 홈택스 > 민원증명(증명발급) > 민원증명 원본확인」에서 발급번호로 확인, 또는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.
- (공문서를 위·변조하거나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.) * 본 증명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대민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증명서입니다.